

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이봉준 의원 대표 발의)

2024. 12.

서울아리수본부

-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.
-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48호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수도시설 손괴 시 원인자부담금은 현장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손괴에 따른 자산가치 훼손 등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 징수를 위한 ‘간접복구비’ 적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,
- 원인자에 의해 발생한 공사로 인한 단수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, 병물아리수 지원 및 기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근거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.
- 안정적인 상수도시설 관리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,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